



World Para
Ice Hockey

World Para Ice Hockey

Classification Rules and Regulations

July 2017



World Para Ice Hockey Classification Rules and Regulation

등급분류 규칙 및 규정

2017년 7월

구성

| | |
|------------------------|----|
| 구성 | 2 |
| 파트1 일반 규정 | 5 |
| 1 범위와 적용 | 5 |
| 2 역할 및 책임 | 7 |
| 파트2 등급분류사 | 9 |
| 3 등급분류사 | 9 |
| 4 등급분류사 능력, 트레이닝 및 수수료 | 10 |
| 5 등급분류 시행 코드 | 12 |
| 파트 3 선수 평가 | 13 |
| 6 일반 규정 | 13 |
| 7 적격 장애 | 13 |
| 8 최소 장애 기준 | 16 |
| 9 스포츠 등급 | 17 |
| 10 등급분류 미완료 | 18 |
| 파트4 선수평가 및 등급분류 패널 | 19 |
| 11 등급분류 패널 | 19 |
| 12 등급분류 패널 책무 | 19 |
| 13 평가 세션 | 20 |
| 14 스포츠 등급 상태 | 21 |
| 15 알림 | 23 |
| 파트5 스포츠 등급 부적격 | 24 |
| 16 스포츠 등급 부적격 | 24 |
| 파트6 이의제기 | 26 |
| 17 이의제기 범위 | 26 |
| 18 이의제기가 허용되는 단체 | 26 |
| 19 국가 이의제기 | 26 |
| 20 국가 이의제기 절차 | 27 |

| | |
|--|----|
| 21 World Para Ice Hockey 이의제기 | 28 |
| 22 World Para Ice Hockey 이의제기 절차 | 28 |
| 23 이의제기 패널 | 28 |
| 24 이의제기 패널이 불가능한 경우 규정 | 29 |
| 25 특별 규정 | 30 |
| 26 이의제기와 관련된 특별 규정 | 30 |
| 파트7 평가 세션 동안 위법 행위 | 31 |
| 27 평가 세션 불참 | 31 |
| 28 평가 세션 정지 | 31 |
| 파트8 의료 검토 | 33 |
| 29 의료 검토 | 33 |
| 파트 9 의도적 허위 진술 | 34 |
| 30 의도적 허위 진술 | 34 |
| 파트 10 선수 정보 사용 | 36 |
| 31 등급분류 데이터 | 36 |
| 32 동의 및 절차 | 36 |
| 33 등급분류 연구 | 36 |
| 34 선수에게 알림 | 37 |
| 35 등급분류 데이터 보안 | 37 |
| 36 등급분류 데이터 공개 | 37 |
| 37 등급분류 데이터 보유 | 38 |
| 38 등급분류 데이터 접근 권한 | 38 |
| 39 등급분류 마스터 리스트 | 38 |
| 파트 11 항소 | 39 |
| 40 항소 | 39 |
| 41 항소가 허가 되는 단체 | 39 |
| 42 항소 | 39 |
| 43 항소가 관련된 특별 규정 | 39 |

| | |
|------------------------------------|----|
| 파트12 용어 | 40 |
| 부록 1 | 46 |
| 지체 장애 선수 | 46 |
| 1 적격 장애 종류 | 46 |
| 2 최소 장애 기준 | 47 |
| 3 평가 방법 | 48 |
| 부록 2 | 55 |
| 1 부적격 장애 종류 | 55 |
| 2 모든 선수에게 근본적인 건강상태가 아닌 건강상태 | 55 |

파트 1 일반규정

1 범위와 적용

채택

- 1.1 이 등급분류 규칙과 규정은 이 서류에서 “등급분류 규칙”으로 나타낸다. 2015 IPC 선수 등급분류 코드 및 국제 기준의 요구를 시행하기 위해 World Para Ice Hockey에 의해 준비되었다.
- 1.2 등급분류 규칙은 2017년 7월 1일 World Para Ice Hockey에 의해 채택되었다.
- 1.3 이 등급분류 규칙은 여러 개의 부록을 참조한다. 이러한 부록은 등급분류 규칙의 중요한 부분으로 구성된다.
- 1.4 이 등급분류 규칙은 World Para Ice Hockey 규칙과 규정의 부분으로 구성된다.
- 1.5 등급분류 규칙은 선수 평가를 돕기 위해 준비된 등급분류 양식에 의해 보충된다. 이러한 양식들은 World Para Ice Hockey에서 사용가능하고 World Para Ice Hockey에 의해 때때로 수정된다.

등급분류

- 1.6 등급분류는 실시된다.
 - a) 장애인스포츠에서 저격자를 판단하고 Paralympian 선수가 되는 목표를 이룰 기회를 누가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실시된다.
 - b) 선수들을 장애를 최소화하고 어떤 선수 또는 팀이 궁극적으로 승리하는지를 결정하는 스포츠의 뛰어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스포츠등급으로 모으기 위해 실시된다.

적용

- 1.7 이러한 등급분류 규칙은 World Para Ice Hockey에 라이선스 등록을 하거나 World Para Ice Hockey가 관장하는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 및 선수 지원자에게 적용된다.

- 1.8 이 등급분류 규칙은 World Para Ice Hockey의 스포츠 기술 규칙을 포함하여 다른 적용되는 규칙들과 함께 적용되고 읽힌다.

국제 등급분류

- 1.9 World Para Ice Hockey는 스포츠 등급을 받고 이 등급분류 규칙에 부합하는 스포츠 등급 상태(부적격 상태 제외)를 지닌 선수를 국제 대회에서 경기할 수 있는 허가를 준다.
- 1.10 World Para Ice Hockey는 인증 대회(또는 World Para Ice Hockey가 지정한 장소)에서 선수에게 스포츠 등급과 등급분류 규칙에 부합하는 스포츠 등급 상태를 지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World Para Ice Hockey는 인증대회(또는 다른 장소) 이전에 선수, 국가기구 및 NPC를 안내한다.

코드의 해석 및 관계

- 1.11 '조' 참조는 등급분류 규칙의 조를 의미하고 '부록' 참조는 등급분류 규정의 '부록'을 의미하며 등급분류 규칙에 대문자로 표기된 용어는 규칙집 안의 용어집에 설명되어있다.
- 1.12 '스포츠' 참조는 등급분류 규칙의 스포츠와 개인 훈련을 의미한다. [예. 혼성 팀 경기, 여성 팀 경기]
- 1.13 등급분류 규칙의 부록은 등급분류 규칙의 부분이다. 이 두 개 모두 때때로 World Para Ice Hockey에 의해 수정, 보충, 대체될 수 있다.
- 1.14 등급분류 규칙에서 사용된 제목은 편의를 위해 사용되었고 조와 별개로 다른 의미는 없다.
- 1.15 이 등급분류 규칙은 독립적인 문구로 해석 또는 적용될 수 있지만 2015 IPC 선수 등급분류 코드와 국제 기준과 일관되어야 한다.

2 역할 및 책임

2.1 모든 등급분류 규칙과 친숙해지는 것은 선수, 선수 지원자 그리고 등급분류자의 책임이다.

선수 책임

2.2 선수의 역할 및 책무는 다음을 포함한다.

- c) 등급분류 규정에서 수립한 모든 정책, 규칙 및 과정을 따르고 인정한다.
- d) 성실하게 선수 평가에 참여한다.
- e) 건강상태와 장애와 관련된 적절한 정보와 언제 제공되었는지 그리고/또는 World Para Ice Hockey에 언제 만들어 졌는지 확실히 한다.
- f) 등급분류 규칙의 위반에 관한 조사에 협력한다.
- g) 개인 경험 및 전문지식 공유를 통해 교육 과정, 등급분류 리서치의 과정에 활동적으로 참여한다.

선수 지원자 책임

2.3 선수지원자의 역할 및 책무는 다음을 포함한다.

- a) 등급분류 규칙에 의해 수립된 모든 정책, 규칙 및 과정을 따르고 인정한다.
- b) 그들의 영향력을 선수 가치를 위해 사용하고 긍정적이고 공동의 등급분류 태도 및 소통을 위해 행동한다.
- c) 등급분류 시스템의 개발, 관리, 수립을 위해 돕는다.
- d) 등급분류 규칙의 위반과 관련한 조사를 협력한다.

등급분류사 책임

2.4 등급분류자의 역할 및 책무는 다음을 포함한다.

- a) 등급분류 규칙에 의해 수립된 모든 적용가능한 정책, 규칙 및 과정의 지식을 가져야 한다.

- b) 그들의 영향력을 선수 가치를 위해 사용하고 긍정적이고 공동의 등급분류 태도 및 소통을 위해 행동한다.
- c) 등급분류 시스템의 개발, 관리, 수립을 위해 돕는다.
- d) 등급분류 규칙의 위반과 관련한 조사를 협력한다.

파트 2 등급분류사

3 등급분류사

- 3.1 등급분류사는 이 등급분류 규칙의 효과적인 수행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World Para Ice Hockey는 World Para Ice Hockey의 등급분류를 위해 행정, 수행, 조직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등급분류사를 선임한다.

등급분류장

- 3.2 World Para Ice Hockey는 반드시 등급분류장을 선임한다. 등급분류장은 World Para Ice Hockey의 등급분류 업무와 관련한 지시, 행정, 코디네이션, 수행에 있어 책임이 있다.
- 3.3 만약 등급분류장이 선임되지 않으면, World Para Ice Hockey는 등급분류장의 역할을 수행 할 다른 사람 또는 그룹을 선임할 수 있다. (이러한 사람 또는 그룹이 등급분류사 시행코드를 따른다고 동의했을 경우)
- 3.4 등급분류장은 자격을 갖춘 등급분류사가 아니어도 된다.
- 3.5 등급분류장은 특정 책임을 가지고 특정 업무를 지정된 등급분류사 또는 World Para Ice Hockey가 허가한 사람에게 전달한다.
- 3.6 이 등급분류 규정의 어떤 것도 등급분류장 (등급분류사로 인증된)이 등급분류사 그리고/또는 Chief 등급분류사로 선임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등급분류사

- 3.7 등급분류사는 World Para Ice Hockey에 의해 등급분류 패널로서 선수 평가의 부분 또는 모든 요소를 시행하는 공식적으로 인증되고 허가받은 사람이다.

Chief 등급분류사

- 3.8 Chief 등급분류사는 World Para Ice Hockey에 의해 정의된 장소 또는 특정 대회에서 등급분류 관련 일을 수행, 관리, 코디네이트, 지휘하기위해 선임된 등급분류사이다. 특히, Chief 등급분류사는 World Para Ice Hockey에 의해 다음의 일을 수행하는 것이 요구될 수 있다.

- 3.8.1 평가 세션에 참가가 요구되는 선수를 결정한다.

- 3.8.2 등급분류 중에 등급분류 규칙이 적절히 적용되는지 확실히 하기 위해 등급분류사를 감독한다.
- 3.8.3 World Para Ice Hockey와 협의하여 향소를 관리한다.
- 3.8.4 경기에서 등급분류사가 그들의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여행, 숙박 그리고 다른 집행계획들이 적법하게 마련되어있는지 확실히 하기 위하여 대회 관계자와 연락을 취한다.
- 3.9 Chief 등급분류사는 특정 책임을 가지고 특정 업무를 지정된 등급분류사 또는 자격을 갖춘 World Para Ice Hockey 담당관 또는 대표자, 그리고/또는 대회 조직위에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전달한다.

등급분류사 견습생

- 3.10 등급분류사 견습생은 World Para Ice Hockey에 의한 공식 트레이닝 과정에 있는 사람이다.
- 3.11 World Para Ice Hockey는 등급분류 패널의 관리하에 성수 평가의 요소에 참가하거나 등급분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등급분류사 견습생을 선임할 수 있다.

4 등급분류사 능력, 트레이닝 및 수료

- 4.1 등급분류사가 World Para Ice Hockey에 의해 등급분류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등급분류사는 등급분류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허가를 받는다.
- 4.2 World Para Ice Hockey는 반드시 등급분류사가 등급분류 능력을 갖고 유지하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등급분류사에게 트레이닝과 교육을 제공한다.
- 4.3 World Para Ice Hockey는 반드시 투명하고 접근 가능하도록 등급분류사 능력을 명시해야한다. 등급분류사 능력은 반드시 포함한다.
 - 4.3.1 등급분류사는 등급분류 규정을 철저히 이해한다.
 - 4.3.2 등급분류사는 등급분류사로서 활동하기위해 종목의 기술 규칙을 포함하여 종목을 이해한다.
 - 4.3.3 등급분류사는 국제 기준 및 코드를 이해한다.

- 4.3.4 등급분류사는 World Para Ice Hockey의 등급분류사로 활동하기 위하여 전문 자격, 경험, 능력을 갖춰야 한다. 이는 아래의 것들을 포함한다.
 - a) 등급분류사는 반드시 신체장애가 있는 선수를 위한 의사, 물리치료사와 같이 World Para Ice Hockey의 재량에 용인되는 적격 장애 카테고리과 관련된 분야에 건강 의료종사자여야 한다.
 - b) 등급분류사는 특정 종목과 관련된 배경지식 또는 광범위한 코칭이 있어야한다. 또는, World Para Ice Hockey가 인정하는 해부학, 생체역학, 그리고 스포츠 특정 전문기술의 수준을 아우르는 인증되고 확실한 학문자격이 있어야 한다.
- 4.4 World Para Ice Hockey는 등급분류사 능력이 평가될 수 있는 등급분류사의 과정을 설립한다. 이 과정은 다음을 포함한다.
 - 4.4.1 등급분류사 견습생의 증명을 위한 과정
 - 4.4.2 증명 기간을 위한 질 좋은 평가
 - 4.4.3 증명 철회 또는 복원을 위한 옵션을 포함한 수준 이하 수행을 위한 과정
 - 4.4.4 등급분류사 재증명을 위한 과정
- 4.5 World Para Ice Hockey는 반드시 등급분류사 견습생이 되기 원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입문 기준을 명시해야한다. World Para Ice Hockey는 등급분류사 견습생에게 입문 교육을 제공한다.
- 4.6 World Para Ice Hockey는 반드시 증명과 재증명의 목적을 위해 등급분류사에게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 4.7 World Para Ice Hockey는 등급분류사에게 특정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제공한다.
 - 4.7.1 등급분류사로서 증명된 등급분류사의 장애 종류 제한
 - 4.7.2 등급분류사가 시행하는 것이 증명된 선수 평가를 위한 요소의 제한
 - 4.7.3 등급분류사로서 활동이 허가된 대회 또는 이벤트의 수준 제한

- 4.7.4 등급분류사 증명이 유효한 최대 시간
- 4.7.5 등급분류사의 능력을 고려하기 위해 특정 기간 동안 등급분류사 증명이 검토될 수 있다.
- 4.7.6 World Para Ice Hockey가 등급분류사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등급분류사는 자격을 잃을 수 있다.
- 4.7.7 World Para Ice Hockey가 등급분류사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만족할 경우 등급분류사는 자격을 얻을 수 있다.

5 등급분류사 시행 코드

- 5.1 World Para Ice Hockey의 등급분류의 진실성은 등급분류사의 시행에 달려있다. World Para Ice Hockey는 '등급분류사 시행 코드'를 전문 시행 기준으로 채택했다.
- 5.2 모든 등급분류사는 반드시 등급분류사 시행 코드를 따라야 한다.
- 5.3 등급분류사가 등급분류 시행 코드를 위반하는 활동을 했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은 World Para Ice Hockey에 보고해야 한다.
- 5.4 만약 World Para Ice Hockey가 이러한 보고를 받으면 보고를 조사하고 적절하다면 징계 절차를 밟는다.
- 5.5 World Para Ice Hockey는 등급분류사가 실제의 잠재적인 이해의 충돌이 있는지 없는지 결정할 재량을 가지고 있다.

파트 3 선수 평가

6 일반규정

- 6.1 World Para Ice Hockey는 이 등급분류 규칙에 선수가 등급을 받고 등급 상태를 부여받는 과정, 평가기준, 방법이라고 명시했다. 이 과정은 선수 평가라고 부른다.
- 6.2 선수 평가는 아래와 관련된 규정을 포함하여 등급분류 규칙과 약간의 단계를 아우른다.
 - 6.2.1 선수가 종목에 적합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 6.2.2 선수가 종목의 최소 장애 기준에 부합하는지 평가
 - 6.2.3 선수가 특정 업무 및 종목에 있어서 필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정도에 따른 등급 부여받기

7 적격 장애

- 7.1 World Para Ice Hockey가 관장하는 종목을 경기하고 싶은 선수는 반드시 적합한 장애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 적합한 장애는 영구적이어야 한다.
- 7.2 이 등급분류 규정의 부록1은 적합장애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선수는 반드시 World Para Ice Hockey 관장 종목을 경기하기 위해 적합장애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7.3 부록1에 없는 장애는 적합하지 않은 장애이다. 부록2는 이 적합하지 않은 장애의 예를 포함하고 있다.

장애 평가

- 7.4 World Para Ice Hockey는 반드시 선수가 적합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 7.4.1 선수가 적합 장애가 있다고 판단하기 위해, World Para Ice Hockey는 선수에게 근본적인 건강 상태를 설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부록2는 근본적인 건강 상태가 아닌 건강 상태의 예를 보여준다.

- 7.4.2 World Para Ice Hockey가 개인 선수의 적합 장애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World Para Ice Hockey의 재량을 의미한다. World Para Ice Hockey는 선수의 적합 장애가 충분히 명백하다는 것을 고려하여 선수의 적합 장애의 설명을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다.
- 7.4.3 선수가 적합장애를 가지고 있는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World Para Ice Hockey는 선수가 건강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건강상태 영향이 선수로 하여금 경기를 하는데 있어 안전하지 않고 그 선수 (혹은 다른 선수)에게 위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진다면 등급분류 규칙의 10조에 의거하여 선수는 등급분류미완료(Classification Not Completed, CNC)를 부여 받을 수 있다.
- 7.5 선수는 반드시 World Para Ice Hockey에 아래의 정보를 제공하는 진단 정보를 제출해야한다.
 - 7.5.1 선수 등록이 완료된 후 관련 있는 NPC또는 국가기구가 World Para Ice Hockey에 반드시 의료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 7.5.2 의료 진단 양식은 반드시 영어로 작성되어야 하고 인증된 의사에 의해 서명되고 날짜를 기입해야 한다.
 - 7.5.3 World Para Ice Hockey에 의해 요구받을 경우 의료 진단 양식은 반드시 보충 진단 자료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 7.6 World Para Ice Hockey재량으로 의료 진단 양식 또는 진단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고 여겨질 경우 World Para Ice Hockey는 선수에게 의료 진단 양식(필요한 보충 진단 정보와 함께)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7.7 만약 World Para Ice Hockey가 선수에게 진단 정보 제공을 요구한다면 이는 진단 정보 그 자체이며 적격 평가 위원회를 선임할 수 있다.
- 7.8 적격 평가 위원회가 형성되는 과정은 아래의 진단 정보를 고려한다.

- 7.8.1 등급분류장은 관련 있는 국가 기구 또는 NPC에게 선수를 대신하여 진단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린다. 등급분류장은 어떤 진단 정보가 필요한지 그리고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나.
- 7.8.2 등급분류장은 진단 정보의 생성을 위한 타임라인을 설정한다.
- 7.8.3 등급분류장은 적격 평가 위원회를 선임한다. 적격평가위원회는 반드시 등급분류장과 적어도 2명의 적절한 의료 자격을 갖춘 다른 전문가로 구성된다. 모든 적격평가위원회의 멤버는 비밀 프로젝트에 서명한다.
- 7.8.4 만약 등급분류장이 생각하기에 그/그녀가 진단 정보를 평가하는데 있어 필요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그/그녀는 진단 정보 검토에 참여할 수 없다. 하지만 적격평가위원회를 도울 수 있다.
- 7.8.5 선수 개인의 모든 자료와 진단 정보 자료는 적격평가위원회로부터 보유되어야 한다. 적격평가위원회의 각 멤버는 진단 정보를 검토하고 이러한 정보가 적격 장애를 확고히 하는지를 결정한다.
- 7.8.6 만약 적격평가위원회가 선수가 적격 장애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면 선수는 등급분류패널과 함께 선수 평가를 완료가 허가된다.
- 7.8.7 만약 적격평가위원회가 선수의 장애에 대해 만족스럽지 않다면 등급분류장은 관련 국가 기구 또는 NPC에게 서면으로 결정을 전달한다. 국가 기구 또는 NPC는 결정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으며 검토를 위해 적격평가위원회에게 추가 진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만약 결정이 변경되면 등급분류장은 국가 기구 또는 NPC에게 전달한다.

- 7.8.8 결정이 바뀌지 않는다면, 등급분류장은 최종 결정 문서를 국가 기구 또는 NPC에게 발행하여준다. 그리고 등급분류 규칙 16.3조에 따라 선수는 종목 등급 부적격 (Sport Class Not Eligible, NE)을 부여받는다.
- 7.8.9 적격평가위원회는 다수표에 의해 결정한다. 만약 등급분류장이 적격평가위원회의 멤버이고 그/그녀가 진단 정보에 대해 동의하지 않아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결정은 선수는 적격 장애가 있는 것이다.
- 7.9 World Para Ice Hockey는 위에서 설명된 기능에 대해 등급분류패널에게 위임할 수 있다.

8 최소 장애 기준

- 8.1 종목에 참여하고 싶은 선수는 반드시 최소 장애 기준에 부합하는 적격 장애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8.2 World Para Ice Hockey는 선수의 적격 장애가 종목의 기본 활동과 특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도를 확실히 하기 위해 최소 적격 기준을 만들었다.
- 8.3 등급분류 규칙의 부록1은 각 종목에 적용 가능한 최소 장애 기준을 명시하였고 평가 세션의 일부로 최소 장애 기준과 함께 선수의 준수는 등급분류 패널에 의해 평가된다.
- 8.4 종목을 위한 최소 장애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선수는 스포츠 등급 부적격 (Sport Class Not Eligible, NE)를 부여받는다.
- 8.5 등급분류 패널은 반드시 선수가 최소 장애 기준에 부합하는지 평가해야한다. 이는 평가 세션의 일부로 진행된다. 평가 세션에 참가하기 전에 선수는 반드시 먼저 World Para Ice Hockey에 그/그녀가 적격 장애가 있다는 것을 만족시켜야 한다.
- 8.6 변형 장비의 사용에 관하여 World Para Ice Hockey는 최소 장애 기준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다.

- 8.6.1 적격 장애를 위해, 최소 장애 기준은 선수가 어떻게 종목의 필수 활동 및 특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형 장비의 사용을 고려하지 않는다.

9 스포츠 등급

- 9.1 스포츠 등급은 이 등급분류 규칙에 있는 World Para Ice Hockey에 의해 규명된 범주이다. 종목의 필수 활동 및 특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한 적격 장애의 영향을 고려하여 선수를 모았다.
 - 9.1.1 적격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은 선수 또는 종목을 위한 최소 장애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선수는 등급분류 규칙의 16조에 의거하여 반드시 스포츠 등급 부적격 (Sport Class Not Eligible, NE)를 부여받는다.
 - 9.1.2 종목을 위한 최소 장애 기준에 부합하는 선수는 스포츠 등급을 부여 받는다. (선수 평가의 정지 및 선수 평가 불참과 관련하여 이 등급분류 규정에서 적용된다.)
 - 9.1.3 World Para Ice Hockey (16.1조와 부합)에 의해 스포츠 등급 부적격(NE)의 부여를 제외하고 스포츠 등급의 부여는 종목의 필수 활동 및 특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반드시 등급분류 패널에 의한 평가를 기준으로 한다.
- 9.2 이 등급분류 규칙의 부록1은 스포츠 등급의과 스포츠 등급 부여를 위한 방법론과 평가 기준을 명시한다.

10 등급분류 미완료

- 10.1 어떤 단계이든 World Para Ice Hockey 또는 등급분류 패널은 선수에게 스포츠 등급을 부여할 수 없다. 등급분류장 또는 관련 있는 Chief 등급분류사가 등급분류 미완료 (Classification Not Completed, CNC)를 부여할 수 있다.
- 10.2 CNC의 부여는 스포츠 등급이 아니고 항소와 관련한 등급분류 규칙에서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CNC는 World Para Ice Hockey 등급분류 마스터리스트의 목적을 위해 기록된다.
- 10.3 CNC를 부여 받은 선수는 World Para Ice Hockey의 경기에 참가할 수 없다. 복원을 위해 28조를 참조하십시오.

파트4 선수 평가 및 등급분류 패널

11 등급분류 패널

- 11.1 등급분류 패널은 평가 세션의 일부로 선수 평가요소를 측정하기 위해 World Para Ice Hockey에 의해 선임된 등급분류사의 집단이다.

일반 규정

- 11.2 등급분류 패널은 반드시 적어도 2명의 인증된 등급분류사로 구성되어야 한다. 예외 상황으로 등급분류사가 유효한 의료 자격을 갖춘 경우 한명의 등급분류사로 구성될 수 있다는 것을 Chief 등급분류사는 제공한다.
- 11.3 인증된 등급분류사의 수를 충족하는 것 외에 등급분류사 견습생은 등급분류패널의 일부가 될 수 있고 선수 평가에 참가할 수 있다.

12 등급분류 패널 책무

- 12.1 등급분류 패널의 책무는 평가 세션을 시행하는 것이다. 평가 세션의 일환으로 등급분류 패널은 반드시 아래의 것들을 수행해야 한다.
- 12.1.1 선수가 종목의 최소 장애 기준에 부합하는지 평가
 - 12.1.2 선수가 종목의 필수 활동 및 특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평가
 - 12.1.3 대회에서 관찰 시행 (요구 시)
- 12.2 평가 세션 후 등급분류 패널은 반드시 스포츠 등급과 스포츠 등급 상태를 부여하거나 CNC를 부여한다.
- 12.3 평가 세션 전에, World Para Ice Hockey가 등급 분류 패널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고 요청하지 않는 이상 World Para Ice Hockey에 의해 선수가 적격 장애가 있는지 평가되어야 한다.
- 12.4 평가 세션은 주요 업무와 활동의 관찰이 반복되는 것을 허용하는 경쟁적이지 않은 환경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 12.4.1 낮은 체력 수준, 부족한 기술 능력과 노화 등이 종목의 활동과 필수 업무에 영향을 주더라도 스포츠 등급 배정은 이러한 요소들에 의해 영향 받지 않는다.
- 12.5 부적격 장애가 스포츠 등급을 부여하는 등급분류 패널의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부적격 장애와 적격 장애를 가지고 있는 선수는 적격 장애의 기준으로 등급분류 패널에 의해 평가된다.
- 12.6 선수에게 배정된 스포츠 등급은 부록1에 명시되어 있는 과정과 일치한다.

13 평가 세션

- 13.1 이 조항은 모든 평가 세션에 적용된다.
- 13.2 선수의 국가 기구 또는 NPC는 선수가 이 조항과 관련한 그들의 임무를 따를 것을 확실히 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 13.3 선수와 관련하여:
 - 13.3.1 선수는 평가 세션에 참가할 때 선수의 국가 기구 또는 NPC의 멤버와 동행할 권리가 있다. 선수가 지적 장애가 있거나 미성년자일 경우 반드시 동행해야 한다.
 - 13.3.2 평가세션에서 선수에 의해 동행자로 선택된 사람은 선수 장애 및 종목 역사에 대해 친숙해야 한다.
 - 13.3.3 선수와 동행자는 반드시 World Para Ice Hockey에 의해 명시된 선수 평가 동의서 양식의 용어를 알아야 한다.
 - 13.3.4 선수는 여권, ID, World Para Ice Hockey 라이선스 또는 대회 허가증을 제공하면서 반드시 그/그녀의 신원을 입증해야한다.
 - 13.3.5 선수는 반드시 등급분류패널에게 약 그리고/또는 의료 장비/임플란트/의 사용을 밝혀야 한다.
 - 13.3.6 선수는 반드시 등급분류 패널이 주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13.4 등급분류 패널과 관련하여:

- 13.4.1 등급분류 패널은 스포츠 등급을 배정하는데 있어서 선수 적격 장애와 관련된 의뢰서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선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 13.4.2 등급분류 패널은 World Para Ice Hockey가 따로 명하지 않은 이상 영어로 평가 세션을 실시한다. 만약 선수가 통역을 요구한다면, 선수의 국가 기구 또는 NPC 소속 한 사람이 통역의 책임을 갖는다. 통역은 위의 13.3.1조항에 따라 평가 세션에 참가가 허용된다.
- 13.4.3 등급분류 패널은 스포츠 등급 배정하는데 있어서 의료, 기술, 과학적인 의견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등급분류장 그리고/또는 Chief 등급분류사의 동의하에 찾아 볼 수 있다.
- 13.4.4 13.4.3 조항에 따라 찾은 의견과 덧붙여, 스포츠 등급을 부여할 때 등급분류 패널은 선수, 국가 기구, NPC, World Para Ice Hockey와 관련된 증거를 여길 수 있다.
- 13.4.5 등급분류 패널은 스포츠 등급을 부여할 때 영상을 찍거나 다른 녹화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14 스포츠 등급 상태

- 14.1 등급분류 패널이 선수에게 등급을 부여하는 것은 스포츠 등급 상태를 부여하는 것이다. 스포츠 등급 상태는 선수가 미래에 선수 평가를 진행해야 하는지 혹은 마는지에 대한 것을 명시한다. 그리고 만약 선수의 스포츠 등급 상태가 이익제기를 할 수 있다면.
- 14.2 평가 세션 종료 시에 등급분류 패널에 의해 부여된 스포츠 등급 상태는 아래 중 하나이다.
 - 확인 Confirm (C)
 - 검토 Review (R)
 - 검토날짜 수정과 함께 검토 (FRD)

스포츠 등급 상태 New

14.3 선수의 첫 번째 평가 세션에 출석하기 전에 선수는 World Para Ice Hockey 에 의해 스포츠 등급 상태 New (N)을 부여 받는다. 스포츠 등급 상태 New (N) 선수는 World Para Ice Hockey가 따로 명시하지 않는 이상 모든 국제 대회에서 경기하기 전 반드시 평가 세션에 참석해야 한다.

스포츠 등급 상태 확정

14.4 등급분류 패널이 선수의 적격 장애와 종목에서 필요한 필수 활동 및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만족스럽다면 선수는 스포츠 등급 상태 Confirm (C)을 부여받고 유지된다.

14.4.1 스포츠 등급 상태 확정 (C)를 부여 받는 선수는 추후의 선수 평가를 거치지 않는다. (17조항) 이의제기와 관련된 등급분류 규칙 규정에 따라, 의학 검토 (29조항)과 스포츠 등급 기준 변경 (14.7조항)

14.4.2 오직 한 명의 등급분류사로 구성된 등급분류 패널은 선수에게 스포츠 등급 상태 확정 (C)를 부여할 수 없지만 스포츠 등급 상태 검토 (R)을 부여할 수 있다.

스포츠 등급 상태 검토 Review

14.5 등급분류 패널이 생각하기에 추가 평가 세션이 필요할 경우 스포츠 등급 상태 검토 (R)을 부여받은 선수는 요구된다.

14.5.1 등급분류 패널은 선수가 최근에 World Para Ice Hockey 인증 또는 관장대회에 참가했거나, 선수가 변동이 있는/또는 영구적으로 진행중인 장애/장애를 가지고 있고/또는 선수가 최대 근 골격 또는 스포츠 성숙함에 미치지 못했을 경우를 포함한 여러 개의 요소들을 기반으로 추가 평가세션이 요구된다고 근거를 들 수 있다.

14.5.2 스포츠 등급 상태 검토 (R) 선수는 반드시 World Para Ice Hockey가 따로 명시 하지 않은 이상 국제 대회에서 경기에 임하기 전 선수 평가를 완료해야 한다.

스포츠 등급 상태 검토(검토 날짜 수정)

14.6 선수는 등급분류 패널이 추가 선수 평가가 필요하지만 날짜를 정하기 전에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스포츠 등급 상태 검토 (검토 날짜 수정)를 부여받는다.

- 14.6.1 스포츠 등급 상태 검토 (검토 날짜 수정) FRD 를 부여 받은 선수는 수정 검토 날짜 후에 첫 번째 기회에 평가 세션에 참석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18 스포츠 등급 상태 검토 (검토 날짜 수정) 선수는 2018년 7월 1일 이후 첫 번째 기회의 평가 세션에 참석해야한다.
- 14.6.2 스포츠 등급 상태 검토 (검토 날짜 수정) FRD 를 부여 받은 선수는 의료 검토 요청 그리고/또는 이의제기에 따라서 관련된 수정 검토 날짜 이전에 평가 세션에 참가하지 않는다.
- 14.6.3 한 명의 등급분류사로 구성된 등급분류 패널은 선수에게 FRD를 부여하지 않지만 스포츠 등급 검토 (R)을 부여한다.

스포츠 등급 기준 변경

- 14.7 만약 World Para Ice Hockey가 스포츠 등급 기준 그리고/또는 이 규칙집 부록에 나와 있는 측정 방법을 변경하면:
 - 14.7.1 World Para Ice Hockey는 등급 (C)와 (R)을 갖고 있는 선수를 다시 배정하고 가장 빠른 평가 세션에 참가하도록 한다.
 - 14.7.2 World Para Ice Hockey는 선수의 수정 검토 날짜를 지우고 선수를 가장 빠른 평가 세션에 참가하도록 한다.
 - 14.7.3 두 경우에 관련된 국가 기구 또는 NPC는 빨리 실행가능하게 알린다.

15 알림

- 15.1 선수 평가의 결과는 선수 그리고/또는 국가 기구 또는 NPC에게 알려지고 선수 평가 이후에 최대한 빨리 공지된다.
- 15.2 World Para Ice Hockey는 반드시 선수 평가 후에 대회에서 선수 평가의 결과를 공지하고 결과는 World Para Ice Hockey 웹사이트의 등급분류 Master List를 통해 게재한다.

파트 5 스포츠 등급 부적격

16 스포츠 등급 부적격

일반 규정

- 16.1 World Para Ice Hockey가 선수를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면
 - 16.1.1 선수가 부적격한 장애를 가지고 있다.
 - 16.1.2 선수가 근본적인 건강 상태가 없다.
World Para Ice Hockey는 반드시 선수 스포츠 등급 부적격(NE)를 배정한다.
- 16.2 등급분류 패널이 적격 장애가 있는 선수가 최소 장애 기준을 따르지 않는다고 결정하면 선수는 반드시 NE를 부여 받는다.

적격 장애의 부재

- 16.3 만약 World Para Ice Hockey가 선수가 적격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다면, 선수는:
 - 16.3.1 평가 세션 참가가 허용되지 않는다.
 - 16.3.2 World Para Ice Hockey에게 스포츠 등급 부적격 (NE)와 스포츠 등급 상태 확정 (C)를 받는다.
- 16.4 선수가 적격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이유로 만약 다른 국제 스포츠 기구가 선수에게 스포츠 등급 부적격(NE) 판정을 내리면 World Para Ice Hockey도 이 규칙집 7조항에 설명되어있는 과정의 필요없이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 16.5 아래의 이유로 선수가 World Para Ice Hockey 또는 등급분류 패널 (World Para Ice Hockey에 의해 위임)에 의해 스포츠 등급 부적격 (NE)를 부여받으면
 - 16.5.1 장애가 부적격이다.
 - 16.5.2 건강 상태가 근본적인 건강상태가 아니다.

두 번째 등급분류 패널에 의해 검토를 요청할 권리가 없고 종목에 참가할 수 없다.

최소 장애 기준 준수 부재

- 16.6 두 번째 등급분류 패널은 반드시 두 번째 평가 세션의 방법으로 스포츠 등급 부적격 (NE)를 부여받은 선수에 한 하여 선수가 최소 장애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결정하는 것을 기반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 이는 실행 가능한 빨리 행해져야 한다.
- 16.6.1 두 번째 평가 세션까지 선수는 스포츠등급부적격(NE)를 부여받고 스포츠등급 상태검토(R)를 할당받는다. 선수는 재평가 전까지 경기에 임할 수 없다.
- 16.6.2 만약 두 번째 등급분류 패널이 선수가 최소 장애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면 (또는 만약 선수가 Chief 등급분류사에 의해 정해진 시간에 두 번째 평가 세션에 참석을 거부했을 경우)스포츠등급부적격(NE)와 스포츠 등급상태 확인(C)를 부여받는다.
- 16.7 만약 선수가 사전에 부여받은 스포츠등급부적격(NE)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고 항소 패널에 의해 스포츠등급부적격(NE)를 할당받으면, 선수는 반드시 이의제기 패널에 의해 만들어지는 스포츠등급부적격(NE) 할당에 대한 결정을 검토하는 최종 평가 세션을 제공받는다.
- 16.8 만약 등급분류 패널이 최소 장애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기준으로 스포츠 상태부적격(NE)를 부여받으면 선수는 선수평가를 조건으로 다른 스포츠 경기에 임할 수 있다.
- 16.9 만약 선수가 스포츠상태부적격(NE)을 부여받으면, 진짜 장애의 존재에 대한 의문이 없다. 이것은 그저 World Para Ice Hockey 종목에 경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일 뿐이다.

파트 6 이의제기

이의제기

17 이의제기 범위

- 17.1 이의제기는 선수의 스포츠 등급에 대해서 만들어 질 수 있다. 이의제기는 선수의 스포츠 등급 상태에 대해서 만들어 질 수 없다.
- 17.2 이의제기는 스포츠등급부적격(NE)를 부여받은 선수에 대해 만들어 질 수 없다.

18 이의제기가 허용되는 단체

이의제기는 아래의 기구에서 만들어 질 수 있다.

- 18.1 국가 기구 (19-20조항) 또는
- 18.2 NPC (19-20조항) 또는
- 18.3 World Para Ice Hockey (21-22조항).

19 국가 이의제기

- 19.1 국가 기구 또는 NPC는 선수평가를 대비하여 대회 또는 경기장에서 관할권 아래 선수에 대해 이의제기를 만들 수 있다.
- 19.2 대회 중 선수평가의 결과가 게재되고 (등급분류 규칙 15조항에 따라) 국가 이의제기는 결과가 게재된 후 1시간 이내 만들어져야한다. 만약 선수평가의 결과가 대회 관찰 후에 게재되면 국가 이의제기는 결과가 게재되고 15분 이내에 만들어져야 한다.
- 19.3 만약 선수가 등급분류 패널에 의해 대회 평가 관찰을 시행해야 한다면 국가 기구 또는 NPC는 첫 번째 나타남 전에 이의제기를 해야 한다. 만약 이의제기가 첫 번째 나타남 이전에 만들어지면 선수는 이의제기가 해결되기 전 까지 경기에 참가할 수 없다.

20 국가 이의제기 절차

- 20.1 국가 이의제기를 제출하기 위해서 국가 기구 또는 NPC는 반드시 World Para Ice Hockey 웹사이트를 통해 그리고 대회장 World Para Ice Hockey에 의해 사용가능한 이의제기양식을 작성하고 진실된 보충서류를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다음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20.1.1 이의제기 선수의 SDMS ID와 이름
 - 20.1.2 이의제기 결정의 상세사항 그리고/또는 이의제기 결정의 복사본
 - 20.1.3 이의제기 이유에 대한 설명과 어떤 점에서 국가기구 또는 NPC가 이의제기 결정에 결함이 있었다고 판단하는지에 대한 설명
 - 20.1.4 위반된 혐의의 특정 규칙
 - 20.1.5 이의제기 수수료 100유로
- 20.2 이의제기 서류는 반드시 World Para Ice Hockey에 의해 정해진 기간 내에 관련 대회에서 Chief 등급분류사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Chief 등급분류사가 이의제기 서류를 받고나면 World Para Ice Hockey와 협의하여 이의제기 검토를 한다. 두 개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
- 20.2.1 Chief 등급분류사의 재량으로 Chief 등급분류사는 이의제기를 거부할 수 있다. 이의제기는 조항20에 있는 이의제기 요구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 20.2.2 Chief 등급분류사의 재량으로 Chief 등급분류사는 이의제기를 받아들일 수 있다. 이의제기는 조항20에 있는 이의제기 요구조건에 부합한다.
- 20.3 만약 이의제기가 거부되면 Chief 등급분류사는 반드시 모든 관련 단체에게 이를 알리고 국가 기구 또는 NPC에게 실행 가능한 빨리 서면 설명을 제공한다. 이의제기 수수료는 몰수된다.
- 20.4 만약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면
- 20.4.1 이의제기 선수의 스포츠 등급은 이의제기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바뀌지 않고 유지되지만 이의제기선수의 스포츠등급상태는 이의제기 선수의 스포츠 등급 상태가 이미 검토(R)가 아닌 이상 반드시 즉시 검토(R)로 바뀌어야 한다.
 - 20.4.2 Chief 등급분류사는 가능한 빨리 새로운 평가 세션을 시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이의제기 패널을 선임해야 한다. 이는 반드시 이의제기가 만들어진 경기장 또는 다음 대회여야 한다.

20.4.3 World Para Ice Hockey는 반드시 모든 관련 단체에게 이의제기 패널에 의해 시행되는 새로운 평가 세션의 시간과 날짜를 알려야 한다.

21 World Para Ice Hockey 이의제기

21.1 World Para Ice Hockey는 재량으로 선수에 관해 이의제기를 만들 수 있다.

21.1.1 선수가 잘못된 스포츠 등급을 배정 받았다고 고려될 때

21.1.2 국가 기구 또는 NPC가 World Para Ice Hockey에 서류를 요청했을 때. 요청의 유효평가는 World Para Ice Hockey의 재량이다.

22 World Para Ice Hockey 이의제기 절차

22.1 만약 World Para Ice Hockey가 이의제기를하기로 결정하면 등급분류장은 반드시 관련 국가 기구 또는 NPC에게 가능한 빨리 이의제기에 대해서 안내해야한다.

22.2 등급분류장은 관련 국가기구 또는 NPC에게 왜 이의제기가 만들어졌는지 서면 설명을 제공한다.

22.3 만약 World Para Ice Hockey가 이의제기를 한다면

22.3.1 이의제기 받은 선수의 스포츠 등급은 이의제기 결과가 나올 때 까지 바뀌지 않고 유지된다.

22.3.2 이의제기 받은 선수의 스포츠 등급 상태는 이의제기 받은 선수의 스포츠 등급 상태가 원래 검토(R)가 아닌 이상 즉시 검토(R)로 바뀐다.

22.3.3 이의제기 패널은 반드시 가능한 빨리 이의제기를 해결하기 위해 선임된다.

23 이의제기 패널

23.1 Chief 등급분류사는 등급분류장에 의한 권한이 허락하면 조항 23에 따라 등급분류장의 역할을 한다.

- 23.2 이의제기 패널은 이 등급분류 규칙의 등급분류 패널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장에 의해 선임된다.
- 23.3 이의제기 패널은 등급분류 패널 멤버였던 사람은 포함될 수 없다.
 - 23.3.1 이의제기 결정을 내린 멤버
 - 23.3.2 국가기구, NPC, World Para Ice Hockey에 의해 동의 되지 않은 이상, 이의제기 결정이 나기 전 12개월 이내 이의제기 된 선수에 관해 선수평가를 시행한 멤버
- 23.4 등급분류장은 반드시 모든 관련 단체에게 이의제기 패널에 의해 시행되는 평가 세션의 날짜와 시간을 알려야 한다.
- 23.5 이의제기 패널은 반드시 등급분류 규칙에 따라 평가 세션을 시행해야 한다. 이의제기 패널은 새로운 평가 세션을 시행할 때 이의제기 서류를 참고할 수 있다.
- 23.6 이의제기 패널은 반드시 스포츠 등급과 스포츠 등급 상태를 부여해야 한다. 모든 관련된 단체는 등급분류 규칙의 알림 규정에 따라 이의제기 패널의 결정을 안내받는다.
- 23.7 국가 이의제기 및 World Para Ice Hockey의 이의제기 패널의 결정은 최종이다. 국가 기구, NPC 또는 World Para Ice Hockey는 관련 대회에서 또 다른 이의제기를 만들 수 없다.
- 23.8 만약 이의제기 패널의 결정이 선수의 스포츠 등급을 바뀌게 할 경우 이의제기 비용은 국가 기구 또는 NPC 에게 환불된다.

24 이의제기 패널이 불가능한 경우 규정

- 24.1 만약 이의제기가 대회에서 만들어지고 대회에서 이의제기를 해결할 기회가 없다면:
 - 24.1.1 이의제기 받은 선수는 이의제기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스포츠 등급 검토(R)상태로 경기에 임한다.

24.1.2 모든 합당한 절차가 이의제기를 최대한 빨리 해결하기 위해 이루어질 것이다.

25 특별 규정

25.1 World Para Ice Hockey는 대회 시간과 멀리 선수평가를 위해 준비한다. World Para Ice Hockey는 반드시 대회 밖에서 실시되는 평가 세션을 위해 이의제기 규정을 수립한다.

주요 대회 기간 동안 신청

26 이의제기와 관련된 특별 규정

26.1 IPC 그리고/또는 World Para Ice Hockey는 패럴림픽 또는 다른 대회 기간 동안의 운영을 위해 특별 규정을 발행한다.

파트 7 평가 세션 동안 위법 행위

27 평가 세션 불참

- 27.1 선수는 개인적으로 평가 세션에 참석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
- 27.2 선수의 국가 기구 또는 NPC는 선수가 평가 세션에 참석하는 것을 확실히 하는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한다.
- 27.3 만약 선수가 평가 세션에 불참하면 등급분류 패널은 Chief 등급분류사에게 선수의 불참을 보고한다. Chief 등급분류사는 대회에서 불참하는데 합당한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면 등급분류 패널 전에 추후 평가 세션에 참가 할 수 있도록 날짜와 시간 변경을 명시한다.
- 27.4 만약 선수가 불참에 대해 합당한 설명을 하지 못하거나 평가 세션에 두 번째에도 불참한다면 스포츠 등급을 부여받지 못하고 관련 대회에서 경기를 할 수 없다.

28 평가 세션 정지

- 28.1 아래의 상황을 포함하여 선수에게 스포츠 등급을 부여할 수 없을 경우 Chief 등급분류사와 협의하여 등급분류 패널은 평가 세션을 정지시킬 수 있다.
 - 28.1.1 등급분류 규칙에 부합하지 않은 선수
 - 28.1.2 등급분류 패널에 의해 합당하게 요구되는 의료 정보의 제공을 하지 않은 선수
 - 28.1.3 등급분류 패널이 선수에 의해 밝혀진 선수가 사용(미사용)하는 약품, 장치, 임플란트 등의 사용이 공정한 결정을 내리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할 경우
 - 28.1.4 평가 세션 중 등급분류 패널에 의한 요청을 따르는 것이 불가하거나 제한이 있는 건강 상태를 가진 선수, 즉 등급분류 패널이 공정한 평가 세션을 시행하는데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선수.

- 28.1.5 선수가 등급분류 패널과 효과적으로 소통을 할 수 없는 경우
- 28.1.6 선수가 등급분류사의 합당한 지시에 따르는 것이 불가하거나 거절할 경우 등급분류 세션은 시행될 수 없다.
- 28.1.7 선수의 표현이 일관성이 없을 경우 등급분류 세션은 시행될 수 없다.
- 28.2 만약 등급분류 패널에 의해 평가 세션이 정지될 경우 반드시 아래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28.2.1 선수에게 요구되는 개선책의 상세 사항과 정지의 설명이 선수 그리고/또는 관련 국가기구 또는 NPC에게 제공된다.
 - 28.2.2 만약 선수가 Chief 등급분류사 또는 등급분류장의 만족을 위해 개선책을 시행하면 평가세션은 재기된다.
 - 28.2.3 만약 선수가 따르지 않고 정해진 시간 내에 개선책을 시행하지 않으면 평가 세션은 종료되고 선수는 결정이 완료되기 전까지 대회 출전이 불가하다.
- 28.3 등급분류 규칙 10조항에 따라 등급분류 패널에 의해 평가 세션이 정지되면 등급분류 패널은 선수를 등급분류미완료 (CNC)를 부여할 수 있다.
- 28.4 평가세션의 정지는 의도적인 허위진술의 추후 조사를 위해 변경될 수 있다.

파트 8 의료 검토

29 의료 검토

- 29.1 이 조항은 스포츠 등급 확정 (C) 또는 수정 검토 날짜 검토 (FRD)를 받은 선수에게 적용된다.
- 29.2 선수의 장애 변경 정도가 종목에 요구되는 활동이나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트레이닝, 휘트니스 그리고 숙련 정도를 변경하도록 바꾼다면 의료검토요청이 만들어진다.
- 29.3 의료검토요청은 선수의 국가기구 또는 NPC에 의해 만들어진다. (보충자료와 환불 불가한 100유로 수수료와 함께) 의료검토요청은 선수의 장애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설정해야하고 왜 이 변경이 종목에 필요로 하는 활동이나 특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야한다.
- 29.4 의료검토요청은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빨리 World Para Ice Hockey에 제출되어야 한다.
- 29.5 등급분류장은 의료검토요청을 받고 실행 가능한 빨리 의료검토요청이 인정되는지 안 되는지 결정해야한다.
- 29.6 조항 29.2에 있는 변경 사항에 대해 알고 있었으나 국가기구, NPC 또는 World Para Ice Hockey에게 주의를 주지 않은 선수 또는 선수지원은 의도적인 허위진술로 조사받을 수 있다.
- 29.7 만약 의료검토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선수의 스포츠 등급 상태는 검토(R)로 즉시 변경된다.
- 29.8 만약 의료검토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선수의 스포츠 등급 상태는 검토(R)로 즉시 변경된다.

파트 9 의도적 허위 진술

30 의도적 허위 진술

- 30.1 스포츠 등급 배정이후 선수 평가 동안 적격 장애의 정도 또는 그/그녀의 능력에 대해 의도적으로 허위진술(추가 또는 생략)을 하는 것은 징계 행위이다. 징계행위는 '의도적 허위진술'로 지칭한다.
- 30.2 선수평가 과정을 방해하거나 의도적 허위진술로 덮는 것을 포함하여 의도적 허위진술에 연루되는 그 어떤 종류와 선수가 의도적 허위진술을 행하는 것을 돕는 선수 또는 선수지원은 징계행위이다.
- 30.3 의도적 허위진술과 관련된 혐의는 선수 또는 선수지원이 의도적 허위진술을 했는지 안했는지 결정하기 위해 World Para Ice Hockey에 의해 청문회가 열린다.
- 30.4 의도적 허위진술에 참여 공범의 죄로 판단된 선수 또는 선수지원은 아래의 결과를 따른다.
 - 30.4.1 의도적 허위진술이 일어난 대회와 모든 경기에서 자격박탈 그리고 선수가 뛰었던 모든 대회에서 자격박탈
 - 30.4.2 스포츠 등급 부적격 (NE) 부여, 수정 검토 날짜 검토 (FRD) 부여. 1~4년 특정 기간
 - 30.4.3 1~4년 특정 기간 동안 모든 경기 대회 참가 정지
 - 30.4.4 이름과 정지 기간 공표
- 30.5 어떤 선수도 한 번 초과로 의도적 허위진술에 사건 도움을 주거나 연루된 사실이 밝혀지면 스포츠 등급 부적격과 수정 검토 날짜 검토를 4년에서 영원히 특정기간 동안 받는다.

- 30.6 어떤 선수지원도 한 번 초과로 의도적 허위진술에 사건 도움을 주거나 연루된 사실이 밝혀지면, 4년에서 영원히 대회 참가가 정지된다.
- 30.7 만약 다른 국제스포츠연맹에서 선수 또는 선수지원에 의도적 허위진술의 사유로 징계를 가지고 오면 그 결과는 World Para Ice Hockey에 의해 시행되고 인정된다.
- 30.8 의도적 허위진술에 연루된 선수 또는 선수지원을 포함하고 있는 팀은 World Para Ice Hockey의 재량으로 처리된다.
- 30.9 등급분류 규칙에 따라 World Para Ice Hockey에 의해 시행된 징계는 등급분류 내규의 항소기구에 적용되는 것에 따라 해결된다.

파트 10 선수 정보사용

31 등급분류 데이터

- 31.1 World Para Ice Hockey는 만약 등급분류 데이터가 등급분류를 시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여기면 등급분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
- 31.2 World Para Ice Hockey에 의한 모든 등급분류데이터처리는 정밀하게 최신으로 보관된다.

32 동의 및 절차

- 32.1 조항32.3조건으로World Para Ice Hockey는 등급분류 데이터와 관련 있는 선수의 동의를 얻어 등급분류데이터처리를 할 수 있다.
- 32.2 만약 선수가 동의를 제공할 수 없다면 (예. 선수가 어린 경우) 법적 대리인, 후견인 또는 선수가 지정한 대리인이 대신하여 동의를 줄 수 있다.
- 32.3 World Para Ice Hockey는 만약 국가법에 따라서 허가가 된다면 관련 선수의 동의 없이 등급분류데이터처리가 가능하다.

33 등급분류 연구

- 33.1 World Para Ice Hockey는 연구의 목적으로 선수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33.2 World Para Ice Hockey에 의해 사용되는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선수 정보는 반드시 등급분류 규칙 및 윤리적 사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 33.3 선수에 의해 단독으로 그리고 독점적으로 연구목적으로 World Para Ice Hockey에게 제공된 선수정보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 33.4 World Para Ice Hockey는 관련 선수의 동의와 함께 연구 목적으로 등급분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 만약World Para Ice Hockey가 선수에 의해 연구목적으로 제공된 선수 정보를 발행하고 싶다면 발행 전 선수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 이 제한은 만약 발행이 익명이고 개인 정보사용을 동의한 선수가 확인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34 선수에게 알림

- 34.1 World Para Ice Hockey는 반드시 등급분류 데이터를 제공한 선수에게 알린다.
 - 34.1.1 World Para Ice Hockey는 등급분류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사실
 - 34.1.2 등급분류 데이터 수집의 목적
 - 34.1.3 등급분류 데이터 보유 기간

35 등급분류 데이터 보안

- 35.1 World Para Ice Hockey는 반드시
 - 35.1.1 World Para Ice Hockey는 등급분류 데이터의 공개 또는 변형, 사용, 파기, 불허된 접근 또는 잃음을 예방하기 위한 신체적, 조직적, 기술적 그리고 다른 측정을 포함하여 반드시 적절한 보안 보호를 적용하면서 등급분류 데이터를 보호한다.
 - 35.1.2 등급분류 데이터를 제공받은 단체가 등급분류 데이터 사용을 등급분류 규칙에 맞게 하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책임 있는 절차를 밟는다.

36 등급분류 데이터 공개

- 36.1 World Para Ice Hockey는 반드시 다른 등급분류 기관에게 등급분류 데이터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 공개가 다른 등급분류기관에 의해 시행되거나 공개가 국가법에 적용이 되는 경우는 제외.
- 36.2 World Para Ice Hockey는 등급분류 데이터를 다른 단체에게 공개한다. 만약 공개가 이 등급분류 규칙에 일치하고 국가법이 허용하는 경우.

37 등급분류 데이터 보유

- 37.1 World Para Ice Hockey는 등급분류 데이터가 수집 목적에 필요한 기간 동안 보유되는 것을 반드시 확실히 해야 한다. 만약 등급분류 데이터가 등급분류 목적으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면 이는 반드시 삭제, 파기 또는 영원히 익명이어야 한다.

- 37.2 World Para Ice Hockey는 반드시 등급분류 데이터와 관련한 보유기간 가이드라인을 게재해야한다.
- 37.3 World Para Ice Hockey는 반드시 선수와 관련하여 등급분류 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만큼 등급분류 데이터를 보유할 수 있다는 등급분류사 및 등급분류 정책과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38 등급분류 데이터 접근 권한

- 38.1 World Para Ice Hockey로 부터 선수는 요청한다.
 - 38.1.1 World Para Ice Hockey의 등급분류 데이터처리의 확정과 소유한 등급분류 데이터의 설명
 - 38.1.2 World Para Ice Hockey가 가지고 있는 등급분류 데이터 복사본
 - 38.1.3 World Para Ice Hockey가 가지고 있는 등급분류 데이터의 수정 및 삭제
- 38.2 선수를 대신하여 선수 또는 국가 기구 또는 NPC에 의해 요청되고 반드시 합당한 기간 내에 준수해야한다.

39 등급분류 마스터 리스트

- 39.1 World Para Ice Hockey는 선수이름, 성별, 생년, 국가, 스포츠 등급과 스포츠 등급상태를 포함하는 선수의 등급분류 마스터 리스트를 유지한다. 등급분류마스터리스트는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를 확인한다.
- 39.2 World Para Ice Hockey는 등급분류마스터리스트를 반드시 모든 관련 국가 기구가 사용할 수 있도록World Para Ice Hockey웹사이트 공시한다.

파트 11 항소

40 항소

40.1 항소는 선수 평가 그리고/또는 등급분류 절차가 어떻게 시행되었는지 제출되었는지 해결되었는지에 관한 공식적인 반대 절차이다.

41 항소가 허가되는 단체

41.1 항소는 아래의 단체에 의해 만들어질 수 있다.

41.1.1 국가기구

41.1.2 NPC

42 항소

42.1 만약 국가기구 또는 NPC가 스포츠 등급 그리고/또는 스포츠 등급 상태 배정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결과로 선수가 잘못된 스포츠 등급 또는 스포츠 등급 상태를 배정받았을 경우 항소를 제출할 수 있다.

42.2 등급분류 항소 위원회(BAC)는 항소 해결을 위해 청문회 기구 역할을 한다.

42.3 항소는 반드시 BAC 내규에 일관되어 해결된다.

43 항소와 관련된 특별 규정

43.1 IPC 그리고/또는 World Para Ice Hockey는 패럴림픽 경기 또는 다른 대회 기간 동안 특별 규정을 발행할 수 있다.

파트 12 용어

Adaptive Equipment (적응 장비): 결과를 달성하고 참가를 가능하게 하는 경기 중 선수에 의해 사용되는 선수의 특별 요구를 위해 적용된 도구 및 기구

Appeals (항소): 등급분류 과정에서 World Para Ice Hockey가 공정하지 않은 결과를 내린 것에 대한 항의를 하는 방법

Athlete (선수): 등급분류의 목적, 국제 레벨 (World Para Ice Hockey에 의해 정의) 또는 국내 레벨 (각 국가 연맹에 의해 정의) 스포츠에 참가하는 사람 그리고 사람의 국가 연맹에 의해 지정된 낮은 레벨의 스포츠에 참가하는 사람

Athlete Evaluation (선수 평가): 선수가 스포츠 등급과 스포츠 등급상태를 받기 위해 이 등급분류 규칙에 따라 시행되는 과정

Athlete Support Personnel (선수 지원): 대회 및 트레이닝을 준비 및 참가하기 위해 코치, 선수와 함께 일하는 또는 치료하는 트레이너, 매니저, 통역, 에이전트, 팀 스태프, 관계자, 의료원 또는 장애인 의료원 등

BAC: 등급분류 항소의 IPC 위원회

Chief Classifier (Chief 등급분류사): World Para Ice Hockey에 의해 선임되어 이 등급분류 규칙에 따라 특정 대회의 등급분류 관련 일을 시행하고 조직화하고 관리하는 등급분류사

Classification (등급분류): 특정 종목에 필요한 필수적인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선수의 장애 정도에 따라 선수를 스포츠 등급으로 모으는 과정. 이는 또한 선수 등급분류로 지칭한다.

Classification Data (등급분류 데이터): 선수 그리고/또는 국가 기구 그리고/또는 그 어떤 사람에 의해 등급분류 기관에 제공된 개인 정보 그리고/또는 민감한 개인 정보

Classification Intelligence (등급분류 지능): 등급분류와 관련되어 국제 스포츠 연맹에 의해 사용되고 얻어진 정보

Classification Master List (등급분류 마스터 리스트): World Para Ice Hockey에 의해 만들어진 어떤 선수가 스포츠 등급과 스포츠 등급 상태를 배정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리스트

Classification Not Completed (등급분류 미완료): 선수 평가를 시작하였으나 만족스럽게 완료하지 못한 선수에게 부여

Classification Organisation (등급분류 기관): 선수평가의 과정을 시행하고 스포츠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분류 데이터를 소지하고 있는 기관

Classification Panel (등급분류 패널): 등급분류 규칙에 따라 스포츠 등급과 스포츠 등급상태를 결정하기 위해 World Para Ice Hockey에 의해 지정된 등급분류사의 모임

Classification Personnel (등급분류 인원): 선수 평가와 관련하여 등급분류사를 포함하여 등급분류 기관의 권한을 이행하는 사람. 예를 들어 행정직원.

Classification Rule (등급분류 규칙): 등급분류 규칙 및 규정으로 지칭. 선수 평가와 관련하여 World Para Ice Hockey에 의해 쓰인 정책, 절차, 프로토콜, 설명.

Classification System (등급분류 시스템): 파라스포츠 내에 스포츠 등급 부여와 발전을 위해 World Para Ice Hockey에 의해 사용되는 틀

Classifier (등급분류사): 등급분류 패널로서 선수를 평가하기 위해 World Para Ice Hockey에 의해 공식적으로 허가된 사람

Classifier Certification (등급분류사 인증): 등급분류사가 요구되는 등급분류사 능력에 부합하는지 World Para Ice Hockey가 평가하는 과정

Classifier Competencies (등급분류사 능력): World Para Ice Hockey가 등급분류사로서 선수 평가를 시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여기는 자격 및 능력

Classifier Code of Conduct (등급분류사 시행 코드): World Para Ice Hockey에 의해 명시된 등급분류사를 위한 행동 윤리 기준

Code (코드): 국제 기준과 함께 선수 등급분류 코드 2015: 선수 평가; 적격 장애; 이의 제기 및 항소; 등급분류사 그리고 트레이닝; 그리고 등급분류 데이터 보호

Competition (대회): 하나의 관장 기구 아래 시행되는 개인 이벤트의 시리즈

Compliance (준수): IPC에 의해 정의된 코드의 의도 그리고 본문을 고수한 정신 규칙, 규정, 정책, 과정의 시행.

Continuing Education (지속적인 교육): 종목의 등급분류사로서 발전된 지식과 기술을 보존하기 위해 World Para Ice Hockey에 의해 명시된 높은 지식 및 실질적인 기술의 전달

Diagnostic Information (의료 정보): 의료 기록 그리고/또는 World Para Ice Hockey가 현존하거나 적격 장애 또는 기본 건강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서류

Eligible Impairment (적격 장애): 등급분류 규칙에 상세히 나와 있는 파라스�포츠를 경기하는데 필요한 장애

Eligibility Assessment Committee (적격 평가 위원회): 적격 장애를 평가하기 위해 형성된 특별 기구

Entry Criteria (엔트리 기준): 등급분류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전문 또는 경험 수준과 관련된 World Para Ice Hockey에 의해 설정된 기준. 예를 들어 전직 선수 또는 코치, 스포츠 과학자, 체육교사 그리고 의료 전문가, 선수평가를 진행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갖춘 모든 사람이 될 수 있다.

Entry-level Education (초보 교육): 등급분류사로 시작할 수 있는 World Para Ice Hockey에 의해 명시된 기본 지식 및 실제 기술

Evaluation Session (평가 세션): 선수가 최소 저격 기준에 부합하는지 평가하기 위한 등급분류 패널에 출석해야 하는 세션; 선수가 스포츠를 하는데 필수적인 활동 또는 특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따른 스포츠 등급 또는 스포츠 등급 상태 부여. 평가 세션은 경기장내에서 관찰도 포함한다.

Event (이벤트): 경기, 게임, 단발적인 스포츠 콘테스트

First Appearance (첫 번째 출연): 특정 스포츠 등급으로 대회 동안 선수가 첫 번째로 경기를 하는 것

Fixed Review Date (수정 검토 날짜): 선수가 수정 검토 날짜 검토 스포츠등급 상태를 부여받기 전 등급분류 패널에 의해 지정된 날짜는 평가 세션의 참석을 요구하지 않는다.

Head of Classification (등급분류장): World Para Ice Hockey의 등급분류 일을 시행하고 조직화하고 관리하기 위해 World Para Ice Hockey에 의해 선임된 사람

Health Condition (건강 상태): 병리학, 급성질환 또는 만성질환, 장애, 부상 또는 트라우마

Impairment (장애): 신체적, 시력 또는 지적 장애

Intellectual Impairment (지적 장애): 18세 이전에 비롯된 개념, 사회적, 실제적 적용 가능한 기술의 표현의 행동과 기술이 지적으로 제한

Intentional Misrepresentation (의도적 허위진술): 스포츠 등급을 부여 받은 후 선수 평가 동안 그리고/또는 어느 시점에서든 파라 스포츠와 관련된 적격 장애 정도 그리고 능력에 관해 국제 스포츠 연맹 또는 국가기구를 잘못 이끌게 의도적으로 시도 (사실 또는 생략으로)

International Competitions (국제 대회): IPC, 국제스포츠연맹 또는 주요 대회 조직위가 관장하며 대회를 위해 기술 임원을 선임하는 대회

International Sport Federation (국제 스포츠 연맹): IPC에 의해 인증되는 스포츠 연맹으로 독점으로 IPC에 의해 의한 파라스포츠 상태를 부여받은 장애 선수를 위한 스포츠 기구. IPC와 장애인을 위한 국제 스포츠 기구는 특정 스포츠를 위해 국제 스포츠 연맹으로 역할을 한다.

International Standards (국제 기준): 코드를 보완하고 추가 기술 및 등급분류를 위한 운영적 요구조건을 제공하는 서류

IPC: 국제 패럴림픽 위원회

Maintaining Certification (자격 유지): 등급분류사로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능력을 위해 필요한 발전된 트레이닝, 교육, 연습

Major Competition Organiser (주요 대회 조직자): 국제대회를 관장하는 기구 조직

Medical Diagnostics Form (의료 진단 양식): 선수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선수평가를 위해 국가기구 또는 NPC 가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양식

Medical Review (의료 검토): World Para Ice Hockey가 선수가 부여 받은 스포츠 등급이 올바른지 확인하기 위하여 선수의 적격 장애가 변경되었을 때 선수평가의 요소가 착수되어야 하는지 확인하는 과정

Medical Review Request (의료 검토 요청): 선수를 대신하여 의료검토를 위해 국가 기구 또는 NPC에 의해 만들어 지는 요청

Model of Best Practice (모범사례 모델): 국제 기준과 코드의 수립을 돕기 위해 IPC에 의해 준비된 특별 규정 가이드라인 서류

National Body (국가 기구): 국제스포츠연맹의 국가 멤버로 지칭

National Law (국가 법): 등급분류기관에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법, 규정 및 정책 그리고 국가 데이터 보호

National Paralympic Committees (국가 패럴림픽 위원회): IPC의 국가 멤버. 한 국가의 장애 선수를 대표. IPC의 회원국이다.

National Protest (국가 이의제기): 선수에 관해 국가기구 또는 NPC에 의해 만들어지는 이의제기

Non-Competition Venue (경기장 외): 스포츠 등급과 스포츠 등급 상태를 부여 받기 위한 선수평가가 진행되는 World Para Ice Hockey에 의해 지정된 장소 (경기장 밖)

Observation In Competition (경기장 관찰): 등급분류 패널에 의해 대회 시 선수의 관찰. 이를 통해 등급분류 패널은 적격 장애가 종목의 필수 활동 및 특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결정할 수 있다.

Paralympic Games (패럴림픽 대회): 패럴림픽 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포괄적 용어

Permanent (영구적): 코드와 기준에 사용되는 용어 Permanent (영구적)은 장애가 이론적으로 평생 동안 해결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Personal Information (개인 정보): 선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정보

Physical Impairment (신체장애): 선수의 스포츠 활동, 운동실조 구성, 무정위 운동증, 긴장항진, 근력 장애, 관절가동범위 장애, 지 결핍, 다리 길이 차이, 단신의 생체역학 시행에 영향을 주는 장애

Process/Processing (처리): 민감한 선수 정보 그리고/또는 선수 정보의 공개, 사용, 저장, 기록, 수집

Protested Athlete (이의제기 받은 선수): 스포츠 등급이 이의제기 된 선수

Protested Decision (이의제기 결정): 스포츠 등급 결정이 이의제기

Protest Documents (이의제기 서류): 이의제기 수수료와 함께 제출된 이의제기 양식 정보

Protest Fee (이의제기 수수료): World Para Ice Hockey에 의해 규정되는 수수료, 이의제기를 제출할 시 국가 기구 또는 NPC에 의해 지불 가능

Protest Form (이의제기 양식): 국가 이의제기 때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는 양식

Protest (이의제기): 선수 스포츠 등급이 제출되고 결과적으로 해결된 것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Protest Panel (이의제기 패널): 이의제기 결과로 선수평가를 시행하기위해 Chief 등급분류사에 의해 선임되는 등급분류 패널

Re-certification (재 인증): 등급분류사가 특정 등급분류사 능력을 유지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과정

Recognized Competition (인증대회): World Para Ice Hockey에 의해 승인되고 관장되는 대회

Research Purpose (연구 목적): 각 스포츠 종목에 필수 활동 장애의 영향과 이러한 활동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도움이 되는 영향을 포함한 패럴림픽 무브먼트 내 스포츠 개발과 관련된 일을 위한 조사

Signatories (서명인): 등급분류 규칙 방식으로 국제 기준을 코드를 수용하고 수행하는 기관

Sport Class (스포츠 등급): 선수가 종목에서 요구되는 활동 및 특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여 World Para Ice Hockey에 의해 정의된 대회 카테고리

Sport Class Status (스포츠 등급 상태): 이의제기로 선수평가가 요구되는 선수를 나타내는 스포츠 등급에게 지정

Team Sport (팀 스포츠): 대회 기간 동안 선수 교체가 있는 스포츠

Tracking Code Observation Assessment (트래킹 코드 관찰 평가, OA): 경기장 내 관찰이 완료되기 전까지 선수에게 부여되는 선수 등급 상태

Underlying Health Condition (기본 건강 상태): 건강상태가 적격 장애로 이어진다.

Vision Impairment (시력 장애): 안 구조, 시신경 또는 광학적 경로 또는 뇌 중심부의 시각력이 선수의 시력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

부록 1

신체장애 선수

1. 적격 장애 종류

| 적격 장애 | 건강 상태 예시 |
|---|---|
| <p>근력 장애 근력장애를 가진 선수는 움직이거나 힘을 내기 위해서 근육을 자발적으로 수축하는 능력이 없거나 제한되는 건강 상태를 가지고 있다.</p> | <p>근본적인 건강 상태의 예는 척수손상(완전 또는 불완전, 하지마비 또는 대부전마비), 근육 실조, 소아마비증후군 그리고 이분척추를 포함한 근력 장애를 유발한다.</p> |
| <p>지 결핍 지 결핍을 가지고 있는 선수는 트라우마의 결과로 뼈 또는 관절의 부분적 또는 전체적 결핍이 있다.</p> | <p>근본적인 건강 상태의 예로 지 결핍은 포함한다. 외상성 절단, 병 (골암으로 인한 절단) 또는 선천적인 지 결핍 (지체이상)</p> |
| <p>다리 길이 차이 다리 길이 차이 선수는 그들의 다리의 길이에 차이가 있다.</p> | <p>근본적인 건강 상태 예로 다리길이차이는 포함한다. 지체이상 그리고 사지 성장의 선천적인 또는 정신적 외상 폐해</p> |
| <p>긴장 항진 긴장항진을 가지고 있는 선수는 중앙 신경계의 손상으로 인해 근육을 늘리는데 근육의 긴장도가 증가하고 근육의 능력이 줄어든다.</p> | <p>근본적인 건강 상태 예로 긴장항진은 뇌성마비, 정신적 뇌 부상 및 뇌졸중</p> |
| <p>운동 실조 운동실조를 가지고 있는 선수는 중앙신경계의 손상으로 균형 잡힌 동작을 할 수 없는 움직임을 갖는다.</p> | <p>근본적인 건강 상태 예로 운동실조는 포함한다. 뇌성마비, 정신적 뇌 부상, 뇌졸중, 다발성 경화증</p> |

| | |
|---|--|
| <p>무정위 운동증 무정위 운동을 가진 선수는 지속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하는 움직임을 갖는다.</p> | <p>근본적인 건강 상태 예로 무정위 운동증은 뇌성마비, 정신적 뇌 부상 및 뇌졸중을 포함한다.</p> |
| <p>수동적인 가동범위의 장애 수동적 가동범위 장애를 가진 선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관절의 수동적 움직임의 제한을 갖는다.</p> | <p>근본적인 건강 상태 예로 수동적 가동범위 장애는 관절에 영향을 미치는 트라우마 또는 만성 관절 고정으로 인한 관절굽음증과 구축을 포함한다.</p> |

2 최소 장애 기준

2.1 파라아이스하키는 현재 이 규정에 최소 적격 장애로 규명한 한 개의 스포츠 등급을 갖는다.

2.2 파라아이스하키는 부록1 조항1에 규명한 다리에 영향을 주는 적격 장애만이 선수 평가에서 고려된다.

2.3 선수는 반드시 아래에 있는 최소장애기준에 하나라도 부합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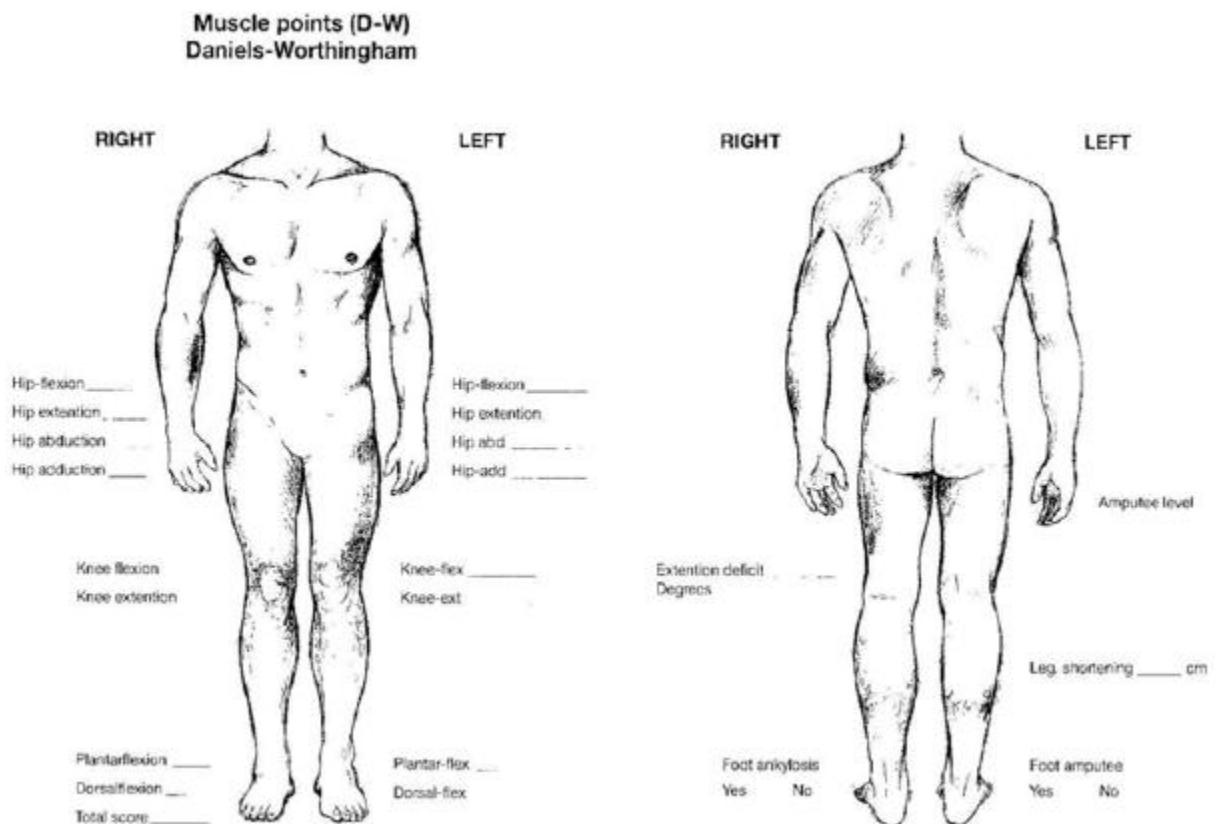
| 장애 종류 | 최소 장애 기준 |
|---------------|--|
| 지 결핍 | 팔다리를 잃은 것과 비슷한 장애를 포함한 일방적인 발목 절단 (사임절단) |
| 근력 장애 | 부록 1의 3.1.2조항에 설명된 도수근력검사에서 양쪽 하지가 10점 감점 (정규 점수=80) |
| 수동적 움직임 장애 | 적어도 30도 확대 결함이 있는 하나의 발목 또는 무릎에서 관절 유착증. (선수의 하지 장애가 오직 엉덩이 주변에만 움직임이 제한된다면 이 선수는 World Para Ice Hockey 경기에 임할 수 없다.) |
| 운동실조, 무정위 운동증 | 손발협조기능검사 3 점 또는 미만 (정규=6) |

| | |
|----------|------------------------------------|
| 긴장항진 | 부록1, 조항 3.2 |
| 다리 길이 차이 | 하나의 다리가 다른 다리보다 반드시 적어도 7cm 짧아야한다. |

3 평가 방법

3.1 근육 트레이닝

3.1.1 아래에 그림은 수동 근육 검사를 시행할 때 등급분류사에 의해 검사되어야 하는 움직임을 보여준다.



3.1.2 이 부분에 묘사된 근육 검사는 선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Daniels 및 Worthingham(8번째 버전)의 수동 근육 검사 기법이 사용되며, Daniel과 Worthingham 단계의 0점, 1점과 2점은 모두 0점으로 입력되는; 한 가지 변경 사항이 있다.

| | |
|---|--|
| <p>3.1.2.1 엉덩이 구부리기:</p> <p>자세: 선수는 다리가 끝에서 매달리도록 하여, 허벅지가 완전히 테이블에 지지되게 앉는다. 선수는 지지를 위해 손을 사용할 수 있다.</p> <p>등급분류사: 먼 쪽 무릎에 손을 얹고 선수 옆에 선다.</p> <p>검사: 등급분류사의 저항에 버티면서, 가동 범위 끝까지 엉덩이 구부리기</p> <p>안내: 선수 다리를 띄우고 등급분류사가 다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세요.</p> <p>점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점 = 허벅지를 테이블에서 띄우며, 선수는 최대 저항성을 견디다. ▪ 4점 = 완화된 저항을 견디며 엉덩이를 구부리고, 마지막 자세에서 “만곡”이 있을 수 있다. ▪ 3점 = 선수는 검사 범위를 완료하고 저항 없이 자세를 유지한다. |  |
| <p>3.1.2.2 엉덩이 펴기:</p> <p>자세: 배를 테이블 바닥에 대고 옆드리기; 만약 엉덩이 구부리기 경축이 존재한다면, 변경된 검사는 수행되어야한다.</p> <p>등급분류사: 발목 바로 위 다리의 지주 부분에 손을 올리고 저항을 주며, 다리 측면의 반대쪽에 선다.</p> <p>검사: 선수는 가능한 전 가동 범위에 걸쳐 엉덩이를 뻗는다. 저항은 바닥을 향하여 수직으로 주어진다.</p> <p>안내: 선수는 무릎을 구부리지 않고 테이블의 다리를 가능한 높이 들어 올리세요.</p> |  |

점수:

- 5점 = 선수는 가능한 범위를 완성하고 최대 저항에 대해 검사 자세를 유지한다.
- 4점 = 완화된 저항을 견디며 가능한 범위를 완성한다.
- 3점 = 선수는 저항 없이 범위를 완성하고 자세를 유지한다.



3.1.2.3 엉덩이 구부리기 수축을 위한 변형된 엉덩이 펴기 검사

자세: 선수는 엉덩이를 굽힌 상태로 서고 몸을 테이블 위로 배를 대고 엮드린다.

등급분류사: 다리 측면 반대쪽에 서고 손은 무릎 바로 위에 허벅지 뒤쪽에 손을 올린다.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반대 손은 골반 측면을 눌러서 고정한다.

검사: 선수는 무릎을 덜 굽히고 가동 범위 내에서 엉덩이를 편다.

안내: 선수는 가능한 높이만큼 당신의 발을 바닥에서 들어올린다.

점수:

- 5점 = 가동 범위의 엉덩이 펴기를 완성하고 최대 저항을 견딘다.
- 4점 = 가동 범위의 엉덩이 펴기를 완성한다. 다리 자세는 저항을 완화된 상태로 유지될 수 있다.
- 3점 = 가동 범위를 완성하고 저항 없이 마지막 자세를 유지한다.



3.1.2.4 엉덩이 외전

자세: 검사 다리가 위쪽으로 오게 옆으로 눕는다. 골반을 전방으로 살짝 튼 상태로 살짝 편고, 아래쪽 다리는 몸을 고정하기 위해 구부린다.

등급분류사: 선수 옆에 서서, 무릎 옆 표면을 따라 손을 움직인다. 다른 손은 큰 돌기 중앙에 가까운 쪽에 놓는다.

검사: 어느 방향에서든 엉덩이 굽힘 또는 회전 없이 가동 범위 내 외전

안내: 선수의 다리를 들어 올리고 등급분류사가 다리를 아래로 내리지 못하게 한다.

점수:

- 5점 = 가능한 가동 범위를 완성하고 최대 저항을 견딘다.
- 4점 = 가능한 가동 범위를 완성하고 완화된 저항을 견딘다.
- 3점 = 가동 범위를 완성하고 저항 없이 마지막 자세를 유지한다.



3.1.2.5 엉덩이 내전

자세: 테이블에 검사 반대 다리를 놓고 옆으로 눕는다. 등급분류사의 도움을 받으며, 검사 다리를 25도로 맞춘다.

등급분류사: 선수의 무릎 정도 뒤에 서고, 검사 다리(아래쪽 다리)에 저항을 주는 손은 무릎 중앙에 가까운 대퇴골 원위부의 중심 표면에 위치시킨다. 테이블 수직 아래 방향으로 저항을 준다.

검사: 아래쪽 다리가 위쪽 다리와 접촉할 때까지 엉덩이를 내전시킨다.

안내: 아래쪽 다리를 위쪽 다리를 향해 들어 올리며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점수:

- 5점 = 전체 범위를 완성하고, 최대 저항을 견딘다.
- 4점 = 완화된 저항을 견딘다.
- 3점 = 가동 범위를 완성하지만 저항을 받지 않는다.



3.1.2.6 무릎 펴기

자세: 짧게 앉아서, 한 손은 무릎 아래를 지지하고, 다른 손은 발목 위에 얹는다, 무릎을 정상 범위 이상으로 펴지 않는다.

등급분류사: 검사 받는 다리 옆에 서서, 아래 방향으로 발목에 힘을 가한다.

검사: 가능성 가동 범위 내에서 펴지만 0도를 넘지 않는다.

안내: 선수의 무릎을 곧게 펴고 등급분류사가 구부릴 수 없도록 한다.

점수:

- 5점 = 최대 저항에 대한 마지막 자세 유지
- 4점 = 완화된 저항에 대해 유지
- 3점 = 가동 범위를 완성하고 저항 없이 자세 유지



3.1.2.7 무릎 굽히기

자세: 다리를 곧게 뻗어 배를 테이블에 대고 옆드리고 테이블 가장자리에 발가락을 걸친다.

등급분류사: 검사할 다리 옆에 서며, 한 손은 발목 바로 위 다리 뒤쪽을 따라 움직이고, 다른 손은 슬광건 위에 놓는다.

검사: 다리의 중성회전을 유지하는 동안 선수는 무릎에 힘을 준다.

안내: 무릎을 구부리고 멈추고 등급분류사가 똑바르게 하지 못하게 한다.

점수:

- 5점 = 최대 저항 및 무릎 구부리기 자세가 무너지지 않는다.
- 4점 = 끝 포지션으로 견디고 중간 저항에 대해 강함
- 3점 = 끝 각도 포지션을 견디지만 저항이 없을 때 견딘다.



| | | |
|--|--|--|
| <p>3.1.2.8 발등굽힘 도치</p> <p><u>자세:</u> 짧게 앉고 발은 등급분류사 무릎에 놓는다.</p> <p><u>등급분류사:</u> 손은 발목 주변에 있고 발의 후방측을 막는다.</p> <p><u>검사:</u> 선수는 발목을 뒤로 젖히고 제자리로 만들며 발가락은 편안히 한다.</p> <p><u>안내:</u> 발을 위로 가져가고 멈추고 등급분류사가 내리게 하지 않는다.</p> <p><u>점수:</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점 = 최대 저항에 대해 최대 가동 범위 ▪ 4점 = 중간 저항에 대해 강한 저항 ▪ 3점 = 최대 가동 범위를 완료하고 저항이 없을 때 견딘다. | |  |
| <p>3.1.2.9 발목 발바닥 구부리기</p> <p><u>자세:</u> 무릎을 늘린 채로 검사를 위해 하지로 서고 지지를 위해 테이블에 손가락 2개만 허용된다.</p> <p><u>등급분류사:</u> 측면으로 서있거나 앉는다.</p> <p><u>검사:</u> 가동범위를 최대한으로 하여 바닥으로부터 발꿈치를 들어올린다.</p> <p><u>안내:</u> 발끝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p> <p><u>점수:</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점 = 최소 25회 ▪ 4점 = 10-24회 사이 ▪ 3점 = 1-9회 사이 | |  |

3.2 운동실조, 무정위 운동증 그리고/또는 긴장항진 선수를 측정 방법

| Utah 대학교 검사 | 활동 설명 | 이상 (점수=0) | 정상 (점수=1) |
|-------------|---|--|--|
| 발속도 교체 움직임 | 선수는 앉은 자세로 앉아있고 그/그녀의 발가락을 등급분류사 손 또는 바닥을 가장 빨리 친다. | 움직임은 느리고 주동근과 길항제 근육의 활동이 애매한 시간에 비정기적임. | 반응이 빠르고 규칙적인 시간에 지속적으로 속도가 유지됨. 15초 내 30회한다. |

| Utah 대학교 검사 | 활동 설명 | 이상 (점수=0) | 정상 (점수=1) |
|-------------|--|--|--|
| 발꿈치부터 정강이 | 선수는 앉은 자세로 그/그녀의 발꿈치를 반대편 무릎에 대고 발꿈치를 정강이에서 발목으로 내리는 것을 무릎에서 발목을 빨리 반복한다. | 선수는 움직임의 속도를 줄이고 통제가 부족해진다. | 반응은 30초 내 50번을 반복한다. |
| 발가락부터 손가락 | 선수는 앉은 자세로 그/그녀의 발가락으로 반복적으로 등급분류사의 손가락을 친다. 등급분류사 4 사분면으로 손가락을 움직인다. | 선수는 목적 지점에 못 미치거나 넘어서고 장애 타이밍과 근육 활동의 비정규적인 움직임이 변질된다. | 반응이 빠르고 반복적으로 정확하고 움직임의 변질이 없다. |
| 일자걸음 | 선수는 발꿈치부터 발가락까지 디디면서 걷는 것을 요청받는다. 이것은 좁은 지지를 요구하며 선수는 넓이 12cm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 정중선 운동실조 선수는 균형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 지지의 좁은 기반이라도 정규적인 일자걸음은 빠르고 유지되고 안정성이 있다. |
| 똑바로 조깅 | 선수는 똑바로 15-20m 조깅한다. | 운동실조 선수는 지지의 좁은 것에서 벗어나고 흔들릴 것이다. | 정규 조깅은 규칙적이고, 변질 없이 안정되면서 빠른 움직임이 있다. |
| 옆으로 조깅 | 선수는 옆으로 조깅한다. a) 다리를 앞뒤로 왔다 갔다 한다. b) 카리오카 15-20분 | 운동실조 선수는 움직임의 속도가 느려지고 다리를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 정규 옆으로 조깅 움직임은 일직선으로 안정성 있고 다리를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이 정기적이고 균형을 잃음 없이 빠르다. |

Utah 대학교 검사 설명은 아래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http://library.med.utah.edu/neurologicexam/html/home_exam.html

부록2

1 부적격 장애 종류

부적격 장애는 다음을 포함한다.

- 통증
- 청각 장애
- 낮은 근긴장
- 관절의 운동 기능 과잉증
- 불안정한 어깨 관절, 관절의 재발탈구 같은 관절의 불안정
- 근지구력 장애
- 모터 반사 기능 장애
- 심혈관 기능 장애
- 호흡 기능 장애
- 대사 기능 장애
- 틱 및 버릇, 고정관념 및 모터 고집증
- 단신
- 시각장애
- 지적장애

2 모든 선수에게 근본적인 건강 상태가 아닌 건강 상태

몇몇의 건강상태는 적격 장애가 될 수 없으며 근본적인 건강상태가 될 수 없다. 건강 상태 (위의 부록1에 명시된 건강상태 포함)를 가지고 있지만 근본적인 건강상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선수는 파라 스포츠 경기에 임할 수 없다.

고통, 피로, 관절 운동 기능 과잉증 또는 정신적 심리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건강상태는 저격 장애가 될 수 없다.

근막통증 기능장애증후군, 섬유근육통 또는 복합통증증후군을 포함하는 건강상태의 예들은 고통을 일으킨다.

피로를 일으키는 건강상태의 예는 만성 피로 증후군이다.

운동 기능 과잉증 또는 긴장항진을 일으키는 건강상태는 엘러스-단로스증후군이다.

정신적인 또는 심리적인 건강상태는 전환장애 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포함한다.



World Para Ice Hockey

Adenauerallee 212-214
53113 Bonn, Germany

Tel. +49 228 2097-200
Fax +49 228 2097-209

WorldParaIceHockey@paralympic.org
www.WorldParaIceHockey.org

© 2017 International Paralympic Committee – ALL RIGHTS RESERVED
Photo ©: POCOG

